



— 質疑와 有權解釋 —

문 의료보험수가 기준액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폐기능검사인 Lung Volume by Piethesmo graph, Exercise Test, Static Lung Compliance의 수가산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?

답 Lung Volume by Piethesmo graph 검사는 폐기능검사(나-651-사)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Exercise Test는 일시에 기본폐기능검사, 폐포기산소량 및 탄소가스량 및 심전도의 변화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폐기능검사(나-651-사)의 소정금액의 2배를 준용 산정합니다.

Static Lung Compliance 검사는 폐기능검사(나-651-사)의 소정금액의 1.5배를 준용 산정하되 동검사에 사용되는 재료인 Esophageal Balloon, Polyethylene Catheter는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. (적용일자: '85. 3. 1 진료분부터)

문 진단방사선과에서 사용할 예정인 접착판 Dansac-Supersquare (System Base Plate)은 경피적 시술을 시행한 후 배액관을 피부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진료 재료이므로 보험급여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.

답 비수술적 담즙제거술(P·T·B·D), 신루설치술(PCN) 등 경피적 시술을 시행한 후에 사용하는 Dansac-Supersquare는 배액관이 빠질 경우 재삽입 수술 및 2차 감염방지를 위한 약제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(산정지침) - (10)-②6에 따라 입원 및 외래

에 불문하고 수술치료기간중 1개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. (적용일자: '85. 4. 1 진료분부터)

문 척추간판탈출증, 척추협착증 등을 수술요법으로 신경근 압박을 제거한 후 요통, 둔부 및 슬관절이상 부위의 동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Facet Joint 에 데포메드롤을 주입하는 Facet Joint Block을 실시할 때 이 경우 수가산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?

답 Facet Joint Block의 기술료는 관절천자(나-802)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하고 C-Arm 영상증폭장치를 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9천2백50원을 가산 산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척추 1 level당 좌우를 실시하더라도 소정금액을 1회만 산정합니다.

문 물리치료요법의 일종인 초음파치료와 물리치료 또는 피부과 치료요법으로 실시하는 적외선 치료시 사용하는 안티푸라민 약제의 약재료 산정범위 및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?

답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용 약제와 약국용 약제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티푸라민이 병원용 치료제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의사가 환자치료시 사용한 안티푸라민 약제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. 안티푸라민은 관절염, 류마티스, 어깨 및 팔 부위의 신경통, 근육통, 타박상, 스킨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(허가번호 45 1956. 12. 1)를 받

아 현재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이므로 그와같은 치료목적으로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에는 소정약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초음파 또는 적외선 치료시 소요된 안티푸라민의 약재료는 그간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진료비 심사기관이 삭감 조치한 사실을 소급적용시 파생될 문제점을 감안하여 '85. 4. 1 이후 진료분 부터는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문 자율신경계 주사약제인 로비놀 (glycopyrrolate) 의 보험급여 범위는?

답 로비놀은 마취시 흔히 발생하는 빈맥 및 서맥을 예방하고 부정맥을 방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신마취시에 한하여 수술전후 2 Ample 이내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문 진료수가기준액표 중 제3장 방사선 진단 및 치료로 산정지침 (6)항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소아에 대한 방사선 촬영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 소정금액의 20%를 가산 산정하고 조영제 주입료는 방사선 진단수가 조건표중 조영제 주입료 산정방법 (209페이지)에 의거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각 주입방법에 따라 산정지침상 『만 6 세이하 소아에 대하여 20%를 가산할 수 있다』는 “주” 항목에 대한 내용을 방사선 특수촬영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?

답 조영제 주입료 산정은 진료수가 기준액표 부록 2 방사선진단수가조건표 조영제 주입료 산정방법 (209페이지)에 의거 조영제 주입료를 주입부위, 방법 및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소정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만 6세 이하의 소아라 할지라도 동기준표 제 3장 방사선 진단 및 치료로 산정지침(6)항에 의거 조영제 사용촬영 「다-2-가~라」시 소정금액 20%를 가산하게 되므로 조영제 주입료를 분류한 소정 준용항목에 대한 본장의 산정지침이나 본항의 “주”에 의한 소아 가산율은 별도 가산 산정할 수 없습니다.

문 진료수가기준액표 제2 장 검사료 부하심 전도검사 「나-654-나-2」에 분류되어 있는 Treadmill Test를 실시하는 경우 Disposable electrode와 Cardiography Paper의 재료가 사용되는데 동재료의 산정여부는 어떠합니까?

답 Treadmill Test에 의한 부하심전도검사는 '83년도 의료보험수가 개정시 재료를 별도로 인정하는 Holter monitoring 검사와 비교하여 재료대를 포함한 수가로 신설한 것이므로 Treadmill Test에 사용하는 Disposable electrode 및 Cardiograph Paper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없습니다.

문 혈액응고제인 헤파린 주사액과 헤파린 투여후 헤파린 길항제인 푸로타민셀페이드 제제의 보험급여 범위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.

답 인공신장투석시 사용되는 헤파린 등의 약재료는 「자-190-주」에 의거 재료대 3만 5천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혈시 사용되는 헤파린 및 헤파린 길항제는 제13장 수혈료 산정지침 3항 본문에 의하여 소정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Cardiac Catheterization Angiogram 및 기타 검사 또는 진단시 사용되는 헤파린 및 헤파린 길항제는 제 2장 산정지침 (4)항 본문 및 제 3장 산정지침 (2)항의 본문 규정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헤파린을 혈전증, 협심증 등에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그 헤파린 주사약 재료는 제 5장 (주사료) 산정지침 (2)항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복막투석(자-190-1)때 사용되는 인 케리놀, 헤파린 등의 약재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을 급여 1492-65654호('81. 10. 13)로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계속적 복막관류술(자-190-2)때 사용되는 헤파린 및 헤파린 길항제제는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. *